

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선산출장소장 이 덕 재

### 나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에서는 '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.
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### (가) 출연 개요

- (1) 기 금 명 : 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
  - (2) 주관기관 : 경상북도
  - (3) 조성근거 :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  - (4) 출연금액 : 금228,000천원
  - (5) 조성목표 : ('93~'17년)2,000억원 → ('27년까지)3,000억원
  - (6) 재 원 : 도, 시·군, 농·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
- ※ 출연근거 :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

### (나) 사업개요

#### (1) 사업대상

-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, 농어업인 단체, 농어업 법인, 농어업 관련기업체 또는 농·축수협, 특수조합 등

#### (2) 지원사업

-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
-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
-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
-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

-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
- 농수산물 생산·가공·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
-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
-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
-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
- 농수산물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
-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물식품 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# (3)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

- 지원한도액
  - 개인 : 2억원 이하(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)
  - 법인 : 5억원 이하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·수협)
  - 기타(기업투자유치 등) : 10억원 이하
- ※ 단,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, 법인 10억원 이하
- 지원형태 : 융자지원 100%
- 일반지원
 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  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 스마트팜 조성,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
  - 운영자금 : 연리 1.0%,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
  - 시설자금 : 연리 1.0%,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

(4) 사업추진절차

- '24. 9월 : 사업지원계획 시달(도)
- '24. 9~10월 :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(시)
- '24. 12월 :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(도)
- '25. 1~12월 :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(사업자⇒시)
- '25. 1~12월 : 사업완료확인서 발급(시)
- '25. 1~12월 : 용자실행(금융기관)

(다) 출연의 필요성

- (1)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'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
- (2)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('17. 7. 14, 시군 농정과장 회의)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

(라)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

- (1) 구미시 출연현황 (단위 : 백만원)

기관별	계	'93~'23년 출연실적	'24년 출연액	'25년 출연계획	비고
구미시	7,164	6,708	228	228	

- (2)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'23년까지	'24년	'25년	
재 원 별	계	283,795	267,620	8,323	7,852
	도	68,424	65,924	-	2,500
	시·군	120,756	112,052	4,352	4,352
	금융기관	25,769	23,814	955	1,000
	운영수익	68,846	65,830	3,016	-

(3) 연도별 지원실적(구미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'96-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
농가수(호)	331	201	12	17	13	11	8	7	20	14	28
융자금액	35,621	18,424	1,980	2014	2,124	1,720	790	643	2,670	2,756	2,500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3조

○ 합 의: 예산재정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출연안은

-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'22년 28억, '23년 27억, '24년 10월까지 25억을 총 62농가에 지원하였으며,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농업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